

적극행정 운영규정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부

제정 2021.12.14. 규정 제443호

개정 2023.07.27. 규정 제486호

개정 2024.02.21. 규정 제50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과 고객에게 봉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이라 한다)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심평원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무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심평원 임직원의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심평원 제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적극행정의 추진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임직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원장은 「직제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과 고객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사업이나 업무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담당부서의 지정) 원장은 심평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

는 적극행정책임관과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2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원장은 심평원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인사규정」 제52조에 따라 교육훈련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을 위한 규정 정비) 원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제3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9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평원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27.>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임직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4.02.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각 상임이사 별로 소관부서의 장 중에서 위촉하며,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책임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02.21.>

④ 감사실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민간위원은 심평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 참석)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자는 의결권한을 가진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평원 위원의 경우 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대리 참석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임직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제13조(위원회 상정 안건의 제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상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간사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담당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업무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상정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심평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민간위원의 해촉) 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심평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3. 위원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평원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상정 안건 회부에 있어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한 사항등에 관한 검토 및 결정
- 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준비·작성·배부와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서면 심의·의결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직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 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직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를 충족하는 때까지 원장에게 해당 사안에 한정하여 심의·의결에 참석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심평원 업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보칙)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평가 및 보상

제24조(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등)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직원
2. 창의적·도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직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심평원 직원에게 모범이 되는 직원

② 원장은 매년 적극행정 관련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와 관련하여, 우수부서 또는 우수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7. 27.]

제2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원장은 제2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직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직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 추천

2. 「인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 선발을 위한 근무 최저 년 수 단축
3. 「인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호봉 특별승급
4.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 우대 조치

② 인사혁신처에서 개최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면책 및 면제) ① 위원회는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요청에 따라 상임감사에게 「감사규정」 제54조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세칙」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원장은 소속 직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하여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원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443호, 2021. 12. 14.>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86호, 2023. 7. 27.>

이 규정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03호, 2024. 2. 21.>

이 규정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청 럽 서 약 서

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극행정 지원위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통하여 국민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3.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4. 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 및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성명:

(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서면 심의·의결서

다음의 안건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1. 회의명:
2. 회의일시(의결기한):
3. 서면의결사유:
4. 안건별 의결내용

안건명(심의항목)	의결내용		의결사유 또는 의견
	찬성(O)	반대(X)	

부의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인 또는 서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